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3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### 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을 별표로 한정하고 있어, 향후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,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현행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함(안 별표).
- 나. 조례에 인용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로 현행화함(안 제7조제1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확장성을 높이고,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됨.

##### 나. 중소기업지원시설 현황

-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로 2020년 현재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5.4%(78,907개) 증가한 155만 3,371개에 이르고 있고,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.7%를 차지하는 규모임.

#### < 중소기업체 수 현황 >

(단위 : 개, %)

지역별		2018			2019			2020		
		전체	중소기업	대기업	전체	중소기업	대기업	전체	중소기업	대기업
전 국	기업수	6,643,756	6,638,694	5,062	6,893,706	6,888,435	5,271	7,295,393	7,286,023	9,370
	비율(%)	100.0	99.9	0.1	100.0	99.9	0.1	100.0	99.9	0.1
서 울	기업수	1,436,350	1,434,046	2,304	1,476,903	1,474,464	2,439	1,557,659	1,553,371	4,288
	비율(%)	100.0	99.8	0.2	100.0	99.8	0.2	100.0	99.7	0.3

※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통계(2022. 8.31.기준)

- 이처럼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업·기술·인력·판로지원·지식재산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·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중소기업 조례”)를 제정(2000.7.)하고, 6개 중소기업지원 시설<sup>1)</sup>(이하 “지원시설”)의 명칭과 위치, 기능 등을 별표로 규정함.
  - 지원시설은 중소기업 관련 ▶창업 및 육성, ▶연구·개발, ▶구매 촉진과 판로개척, ▶설명회·상담회 및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함.
- 이후 도시형 제조업인 패션, 인쇄산업 등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인쇄센터(2002), 서울디자인센터와 서울무역전시장(2005), DMC첨단산업센터(2007.12.)를 순차적으로 지원 시설에 추가함.
- 반면에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통합되고,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은 용도변경에 따라 삭제함(2005.4.).

---

1) 서울산업지원센터(종합지원),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(창업보육),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(전시판매장),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(진시홍보), 서울애니메이션센터(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지원), 서울패션디자인센터(패션산업 육성 지원)

다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 규정 삭제(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, 별표 삭제)

-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(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) 및 별표, 지원시설의 소재지 고시를 삭제함.

<삭제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 (별표)>

명칭	기능
서울신기술창업센터	중소기업 창업지원
삭제(2005.04.14)	
삭제(2005.04.14)	
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	중소기업제품의전시·판매 및 홍보 등
서울애니메이션센터	애니메이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패션디자인센터	패션산업 육성·지원
서울인쇄센터	인쇄산업 육성·지원
서울디자인센터	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
서울무역전시장	중소기업제품 전시·홍보
DMC첨단산업센터	DMC단지 활성화 및 기업 지원

-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력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창업허브, 서울핀테크랩, G밸리 창업복지센터, 홍릉바이오 의료앵커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.
- 반면에, 지원시설 기능이 통폐합되거나 변경·조정되기도 하고, 운영이 종료되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.
  -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창업지원 업무가 종료돼 국제유통센터로 변경

(2021.2.)되었고, 서울패션디자인센터와 서울디자인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통폐합(2013.1.) 등으로 현재 시설이 없으며, 창동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은 운영이 종료(2021.12.)됨.

- 이처럼 해당 지원시설이 확충되거나 폐쇄될 때마다 일일이 조례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임.
- 다만, 조례를 통해 지원시설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지만, 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면서 조례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, 지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고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**< 수정의견 >**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	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	제3조(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,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.

- 한편, 지원시설의 폐쇄와 운영 종료 등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, 소재지를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행하지 않은 바, 지원시설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.

#### 라. 인용 법률의 현행화(안 제7조제1항)

- 안 제7조제1항은 조례에 인용된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” 조항이 “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 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함.
-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.
- 다만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문을 이관해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이 새롭게 제정(2021.7.)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,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5